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기부문화 확산과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6항).
- 나.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헌혈추진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8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인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46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발의의원 : 장인수 의원

찬성의원 :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기부문화 확산과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6항).
- 나. 오산시 헌혈추진협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다. 헌혈추진협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라. 헌혈추진협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헌혈추진협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1
 - 「혈액관리법」 제4조의4,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 현행조례 : 별첨2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헌혈장려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부시장과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의 민간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회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를 대표하고, 협회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회회 회의) ① 협회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회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회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협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회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⑤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u></p> <p>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헌혈장려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u> <u>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u> <u>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u> <u>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u> <u>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부시장과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
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
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헌
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
관, 적십자 혈액원 등의 민간
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p><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u>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신 설></u></p>	<p><u>제1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u></p> <p><u>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16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1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10조 · 제11조 (생략)</u></p>	<p><u>제18조 · 제19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u></p>

【별첨1】

관계법령 발췌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별첨2]

현 행 조 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제정 2013년 5월 27일 조례 제1283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11일 조례 제1381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오산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터 ⑬ 까지 생략